

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 및 실시시기 (제26조제3항 관련)

1. 안전점검

구분	대상시설	실시시기
가. 정기점검	1종 · 2종 · 3종 시설	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, 재해 및 위험 여부 확인,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, 해당 분기에 영농기가 있을 때에는 그 영농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.
나. 긴급점검	1종 · 2종 · 3종 시설	정기점검 외에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 안전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.
다. 정밀점검	1종 · 2종 · 3종 시설	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, 시설의 기능 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어 시설물 보수가 필요할 때 실시하되, 필요 시 1종 · 2종 시설은 정밀점검을 생략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2. 정밀안전진단

대상시설	실시시기
가. 1종 시설	1)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,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다만,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한 시설과 개수 · 보수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다음 한 차례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. 2)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,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.
나. 2종 시설	1)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, 그 이후에는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된 날부터 10년

	이내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2)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중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, 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상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.
--	--

비고

1. 1종 시설: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, 단위시설(1개소)당 2,000마력 이상인 양수장·배수장, 「방조제관리법」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 및 하구둑
2. 2종 시설: 총저수용량 30만세제곱미터 미만인 저수지, 단위시설(1개소)당 1,000마력 이상 2,000마력 미만인 양수장·배수장, 「방조제관리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
3. 3종 시설: 1종·2종 시설 외의 시설 중 양수장, 배수장, 취입보, 지하수 이용 시설, 용수로, 배수로 및 그 부대시설